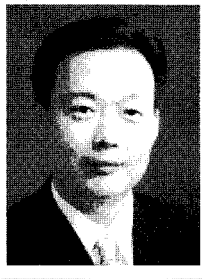


목장 환경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김태욱
AP종합법률 대표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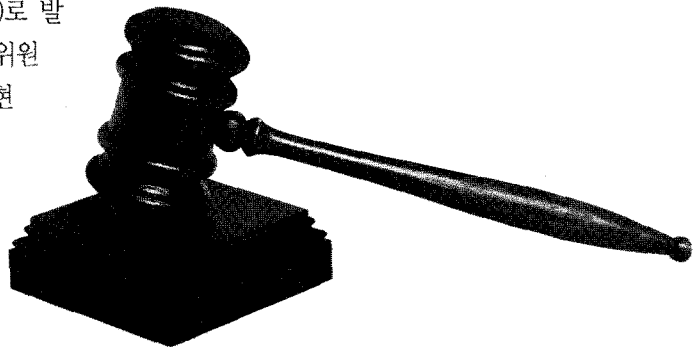
낙농목장을 경영하시다 보면, 목장 인근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행되어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공사를 담당할 업체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임하여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중국에는 소송 등의 법적대응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장에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대응으로는 민사소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고,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때문에 목장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인과관계)과 구체적인 손해액이 밝혀져야 하는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원고)에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정확한 계측과 그 소음·진동이 가축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손해액은 얼마인지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의학적, 공학적 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개인적으로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송절차에서는 인과관계의 인정여부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

데, 그러다보니 소송절차가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분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한 해결을 도모(圖謀)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두고 있는데,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하면 복잡한 소송절차에 비해 간편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느 한 쪽이 조정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결국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만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이 밝혀져야 하는데, 환경분쟁조정제도나 민사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인과관계의 인정여부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소송절차에서는 전문가감정에 의한 감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공정한 감정이 되기 위해서나 환경분쟁조정제도에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입증도 없이 막연히 피해가 있으니 배상해 달라라는 주장만을 한다고 해서 감정절차 등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인과관계의 존재와 손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자가 어느 정도까지는 재판부에 확신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피해인정기준을 소음 60dB(A), 진동 57dB(V)(≈ 0.02 kine)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 7.경에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무수히 많은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가 공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종 연구결과와 수많은 경험



을 바탕으로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을 소음 60dB(A), 진동 57dB(V)($\approx 0.02\text{kin}$)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인과관계의 존재와 손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관찰관청 등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공사 당시의 소음·진동(최소한 소음만이라도)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의 소음·진동이 발생하였다는 자료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폐사 및 유·사산 등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은 훌륭한 입증방법이 됩니다. 다만 본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사진에 날짜가 표시되지 않았던 점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날짜가 표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사자가 경황이 없던 탓에 사진기의 날짜표시 기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였던 때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에 날짜가 없음을 이유로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소송이 길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진은 훌륭한 입증방법이 되므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날짜가 표시되도록 사진을 찍어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이 훌륭한 입증방법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장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때문에 목장의 젖소가 폐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중에 영수증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의 폐사에 따른 손해액은 젖소의 가격에 폐사 두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젖소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실제로 젖소를 거래했던 영수증입니다. 만약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젖소의 가격은 농협 등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통계자료는 실거래 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행히도 당사자가 과거에 거래했던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방법으로 하여 제대로 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도태(淘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확보하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이 한번, 두 번 유·사산을 하다보면 습관성이 되어 결국에는 새끼를 생산해내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여 도태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태로 인한 피해가 폐사로 인한 피해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문 감정인도 당사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도태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도태를 입증할 만한 객관

적인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번거롭더라도 수의사의 진단서 내지는 처리업자의 확인서 등을 꼼꼼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중의 하나는 목장일 것입니다. 매일 매일 꼼꼼히 기록해 놓은 목장일지는 피해를 확인하거나 목장의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 후의 목장 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평소에 목장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두신다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첨연으로 사료나 약품 등이 문제가 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앞서 사료나 약품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 발생 당시에 공급 받은 사료나 약품, 즉 결합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료나 약품을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보한 사료나 약품의 성분분석 등은 인과관계의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회사의 사료나 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의심되는 문제점을 쉽게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보해 두신 사료나 약품을 가지고 성분분석 등을 의뢰해야 인과관계의 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분쟁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의의 피해를 입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연락처: AP종합법률 02-585-8808)

